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년 연령 범위 확대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2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년 연령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2025년 9월 3일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청년 연령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연령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의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u> 사람을 말한다.	1. ----- ----- <u>19세 이상 39세 이하인</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에서는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그 나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²⁾,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³⁾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최근 청년 1인 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청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의 상한 연령과 일치시켜 정책별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에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표] 국내 법령 및 정책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청년기본법		19~34세
통계청		15~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5~29세 *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시 15~34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34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 실업자)		15~34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예비청년창업자)		39세 이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년 1인 창조기업)		39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청년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29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청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19세~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청년근로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5세~29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5조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2조 단서⁵⁾에서는 정책 적용대상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⁶⁾에서는 일부 사업·정책의 경우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도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상한 연령을 39세로 확대함에 따라 법률상 청년고용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임⁷⁾.

다만, 법률상 특정 연령대를 청년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불안정성과 세대 간 격차를 교정하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기회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바,

청년의 구체적인 연령대를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책 환경·분야 등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있을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7)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연령대도 각기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려는 「청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⁸⁾된 만큼, 타법 개정 상황 등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20~30대 초반에 취업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청년 연령의 하한을 현행 15세에서 19세로 상향함으로써 15~18세 청년은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

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2025.3.17. 2208985)